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7차 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9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향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장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강국건설의 험로역경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가장 궁지높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여가시는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과업들을 밝힌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을 경건히 청취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와 정의, 자력부강의 한길로 승승장구해갈 우리 공화국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띠

관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강령, 국가발전 지침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대의원이 보고를 하시었다.

보고자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핵무력발전의 합법적요구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 살아온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자신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담보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구체되어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시었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국방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명이 성취되는 력사의 순간을 가슴뼔듯한 궁지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주의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변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시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향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력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신속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속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과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폐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 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하고 안전한 핵무기 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대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 라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 111 (2022)년 9월 8일

평 양